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해 양 사 고 의 조 사 및 심 판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에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, 같은 법 시행령에 비상임심판관의 위촉 분야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비상임심판관의 세부 자격기준 마련(안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)

- 학교·연구기관 등의 부교수 이상 재직자, 심판변론인, 위촉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해양안전심판원장이 추천한 사람 등

4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협의 예정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
1. 제10조제1항 각 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2.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
3. 제10조제1항 각 호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
4. 그 밖에 비상임심판관으로 등록할 심판원 외의 해양안전심판원장이 추천한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비상임심판관의 자격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0조(비상임심판관의 자격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</u> 1. <u>제10조제1항 각 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</u> 2. <u>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</u> 3. <u>제10조제1항 각 호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</u> 4. <u>그 밖에 비상임심판관으로 등록할 심판원 외의 해양안전심판원장이 추천한 사람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	
연 락 처	(044) 200 - 6130